1. 기술규제명 : 「전자파적합성 기준」

○ 관련부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

○ 개정내용

-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규정
-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 대상 기자재* 및 시험분야별 시험항목** 신설(부칙 : 다른 고시의 개정)

*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

**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

○ 규제구분 : 기술규정, 적합성평가절차

① 기술규정의 경우 (WTO TBT 협정문 제2.9조)

점검 내용	해당여부 점검	비 고
Ⓐ 기술규정이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,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	해당없음	국제표준과 일치
Ⓑ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	해당	동 개정과 연관된 제품의 수입이 있으므로 무역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음
⇒ Ⓐ과 Ⓑ에 모두 해당 시 통보		

② 적합성평가절차의 경우 (WTO TBT 협정문 제5.6조)

점검 내용	해당여부 점검	비 고
Ⓐ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표준화기관의 지침 및 권고의 기술적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, 관련 지침 및 권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	해당없음	국제표준과 일치
Ⓑ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	해당	동 개정과 연관된 제품의 수입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역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음
⇒ Ⓐ와 Ⓑ에 모두 해당 시 통보		